



지정 · 변경 신청서

① 지정

☐

② 변경

☒

※ 뒷면의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작성하시고, □란에는 ✓표시하여 주십시오.

1. 인적사항

③ 성명	홍길동	④ 생년월일	1955년 1월 1일
자택전화번호	(02) 123 - 4567	휴대전화번호	(010) 1234 - 5678

2. 지정 · 변경 사항

⑤ 급여종류	☐ 퇴직생활급여 ☒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☐ 목돈급여 ☐ 지수연동급여		
⑥ 회원번호	612345	일련번호	001

※ 지정 · 변경을 원하는 회원번호(약정서별 일련번호)가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.

⑦ 지정	수급권자	성명				
		생년월일	년	월	일	
	기존수급권자지정	■ 기 지정된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를 지정합니다. ※ 회원 내방시 첨부서류를 생략하며, 우편발송시 관련서류 첨부 ☐ 동일지정 확인				
	신규수급권자지정	■ 수집 · 이용목적 : 수급권자 지정 및 급여금 지급 ■ 수집 · 이용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관계서류상 수집되는 정보, 녹취정보 ■ 보유 · 이용기간 : 가입급여 해지 또는 수급권자 지정 목적 달성시까지 ■ 동의 거부권리 : 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. 다만, 정보동의 거부 시에는 수급권자 지정이 불가능합니다. ■ 수집 · 이용동의 여부 : 귀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☐ 동의 ☐ 미동의 ■ 고유식별정보동의 : 귀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수집 ·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☐ 동의 ☐ 미동의 ※ 수급권자: 서명[인]				
⑧ 변경	구분	현행	변경			
	수령방법	☐ 퇴직생활급여 ☐ 분할급여금 ☐ 매월 ☐ 매년	☐ 매월 ☐ 매년			
	목돈급여금(부가금형)	☐ 3개월 ☐ 6개월 ☐ 12개월	☐ 3개월 ☐ 6개월 ☐ 12개월			
	수령일	☐ 5일 ☐ 15일 ☐ 25일	☐ 5일 ☐ 15일 ☐ 25일			
	지급기간	☐ 5년 ☐ 10년 ☐ 15년 ☐ 20년 ☐ 25년 ☐ 30년				
	유의사항 * 자세한 사항은 뒷면 참조	· 수령방법, 수령일, 지급기간은 1회차 급여금 수령 3영업일 전에만 변경 가능. · 가입 후 1년 미만 매년에서 매월로 변경 시 매월 이자율 적용 · 지급기간 - 분할급여금 : 5년~30년 5년 단위 선택 - 퇴직생활급여 확정연금형 : 5년~20년 5년 단위 선택				
경	급여금(부가금)수령계좌	■ 금융기관 : 농협 ■ 계좌번호 : 083-01-123456				

본인은 귀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 · 변경을 신청합니다. 2023년 4월 25일

※ 수급권자 지정시엔 반드시 인감 날인

신청인 홍길동

서명[인]

유의사항 및 구비서류

구 분	내 용
유의사항	▶ 회원번호 기재 - 지정 또는 변경을 원하는 회원번호(약정서별 일련번호)를 모두 기재하십시오. ▶ 수급권자 지정 - 수급권자 지정대상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, 목돈급여 :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퇴직생활급여 : 배우자, 직계비속, 형제자매, 유서에 급여에 관한 의사표시 - 기존 수급권자와 동일 지정 · 회원 내방 시 : 신분증 지참 · 우편 발송 시 : 관련 구비서류 모두 첨부 - 수급권자 지정 시 수급권자의 개인정보 동의 및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. - 지정·변경신청서 하단 신청인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. ▶ 급여금 수령방법 변경 - 급여금 수령방법 변경은 1회차 급여금 수령 3영업일 전에만 변경 가능합니다. 단, 급여금 수령이후 변경 시에는 제급여(목돈급여, 퇴직생활급여) 청구서를 이용하여 재가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 - 가입 후 1년 미만 매년에서 매월로 변경 시 매월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매월로 변경처리 됩니다. - 급여금 수령사항 변경이후 원금을 해약할 때 해약수수료는 최초 가입일자 기준으로 1년 미만, 1년 이상을 적용합니다. ▶ 분할급여금 지급기간 변경 - 분할급여금 지급기간 변경은 1회차 급여금 지급 3영업일 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구비서류	■ 수급권자 지정시 ▶ 회원인감증명서 또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- 본인 내방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으로 대체 ▶ 가족관계증명서(형제자매 지정 시 부 또는 모), 주민등록등본 택1 1부 ■ 급여금 수령방법 및 수령일, 분할급여금 지급기간 변경시 ▶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1부 ■ 급여금(부가금) 수령계좌 변경시 ▶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1부 ▶ 은행통장 사본 1부

지정·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회원콜센터(1577-34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